

2019학년도 제 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재
권외숙	박종성	

개최일시	2019년 12월 9일 오후 3시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강영숙, 김택동, 김주영, 김화경, 이재진, 이성림, 박종성, 신석하, 이정규, 황지수	기록자(간사)	권외숙	기록일	2019.12.9
		불참의원	김명림, 박소진		
		기타참석자	기획처장, 학사팀장 권경미, 대학원교학팀장 오현준, 경영전문대학원교학팀 대리 강소영		
안건	학칙개정(안) 대학원학칙개정(안), 특수대학원학칙개정(안), 경영전문대학원학칙개정(안),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원 결정				
배포자료 및 기타	학칙개정(안), 대학원학칙개정(안), 특수대학원학칙개정(안), 경영전문대학원학칙개정(안),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원 결정				

■ 심의(자문) 사항

1. 의장은 총 의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2019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

2. 의장은 학생의원인 황지수의원의 기말고사 시험 일정을 감안하여 안건 논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참석 의원들의 동의함에 따라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원 결정 안건을 먼저 상정하다.

① 의장은 오중산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먼저, 교수협의체에 관해 교수협의체 구성 과정부터 7차례에 걸친 회의 진행내용과 진행결과를 설명하다. 이후 2019.11.21. 이사회 회의결과에 대해 보고하다.

의장은 본 안건은 TF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총장과 이사회 협의체 협조 요청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② 강영숙의원은 이제까지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총장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총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진행하였음. 먼저 전체교수회의를 통해서 총장후보선출 규정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신석하의원은 우리대학의 특성 상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을 개정한다면 첫째로 과도한 사전 선거운동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함을 우려하다. 두 번째로 임의규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학교의 유일한 총장후보 선출규정으로 기능을 해왔다. 현재 규정 개정 조항과 이사회에서 얘기하는 추진 일정이 부합하는 것인지, 만약 이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그 이후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수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교수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개인 교수들에게 전달이 전혀 되지 않았고 교수협의체의 설문조사도 이메일로 단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응답률도 40%초반대로 저조하였다.

황지수의원은 학생, 직원, 동문 구성원들은 TF 구성에 이미 동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다.

신석하의원은 TF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규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TF 운영이나 논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다.

이정규의원은 교수님들도 임의규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수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제안하다.

황지수의원은 임의규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TF에서 논의 하자는 것임을 이야기하다.

김택동의원은 대학교 구성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기획처에 총장후보선출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다.

기획처장은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은 기존 총장선출 시 총장의 공약사항이 모티브가 되었으며,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 등과 학생과 노조의 요구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내용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 모두를 TF에서 구성하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사회에서도 현재의 규정을 충분히 존중하되 이 규정이 학교의 공식규정이 아니며, 관리주체가 없는 것이니 공식화된 규정이 필요하여 이사회담화문을 통하여 의견을 표한 것임을 설명하다. 기획처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임면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답변하다.

의장이 학교의 총장후보선출 규정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후보 2인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한다. 문제점은 14조에 조항을 보면, 이 규정을 개정하려면 ‘재직교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수들은 TF에서 새로운 안이 도출되더라도 현재의 임의규정이 준수될 거라고 인식을 갖는다. 반면 이사회에서는 기존의 총장후보선출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14조는 무시하고, TF에서 새로운 안이 도출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따라 시행하겠다. 라는 생각인지를 질의하다.

교수의원들은 현재의 임의규정의 개정작업을 무시하고 진행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다.

김택동의원은 이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트러블이나 갈등 없이 상호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화합의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다.

의장은 TF를 구성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TF를 구성하자는 의견인지 반문하다.

황지수의원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의문을 제기하다.

신석하의원은 TF 구성을 지연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 전체교수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고 이뤄져야한다. 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이다. 어떻게 규정이 개정이 될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고 명확하게 교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없이 TF에서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전체 교수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기획처장은 총장선출임의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는 공정성 등의 문제로 학교 본부가 주도할 수 없고, 교수님들이 각 단위를 대표하는 교수협의체를 원하셨고, 대표로 뽑히신 분들이 교수협의체에서 연구를 하고 개별 교수님들과 교감을 했어야 했다. 학교 본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만 전달하는 것이지 본부 차원의 주도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음을 이야기하다.

신석하의원은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 내용이 ‘예를 들면 현재 규정 14조에 따른 개정과정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본부에서 이사회에 직접 문의하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교수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맞다. 그리해야만 교수들의 참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성림의원은 날짜의 조정이 불가능한지 이사회에 질의하는 것이 어떠한지 질문하다.

③ 의장은 TF구성과 운영은 본부에서 관여할 문제이고, 본 평의원회에서는 TF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자고 이야기 하다.

평의원회 의원들은 총장선출 및 임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TF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다.

직원 대표로는 이정규의원, 다음 순으로 김화경의원을 추천하다.

황지수의원은 학생 대표로는 52대 총학생회장인 임지혜 학생회장이 학생대표로 구성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TF 규모가 커진다면 학생의원도 교원과 비슷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동문위원으로는 이성림의원을, 외부의원으로는 김택동의원을 추천하다.

교원의원은 12월 12일 개최될 전체교수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여 추천하기로 하다.

3. ① 의장은 두 번째 안전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학사팀 권경미 팀장에게 설명을 의뢰하다. 학사팀 권경미 팀장은 학칙 제11조, 38조, 51조, 55조, 63조, 별표3에 대해 설명하다.

황지수의원은 학칙 제38조 5항 개정이 신입생 집중 관리를 위해 입학 후 1년 동안 휴학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본 항의 개정은 다음번 평의원회의제로 재논의해줄 것을 제안하다.

의장은 휴학에 대한 학생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를 질의하다. 기획팀장과 학사팀장은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타 대학의 경우도 신입학 후 1년간 휴학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 하다. 학사팀장은 신입생 모집 전 입학제도와 학사제도 설명 시 미리 안내를 해주고 우리 대학교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하고자 본 규정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다.

황지수의원은 1년 동안 휴학을 불허한다고 하여서 재수나 반수를 하는 학생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 사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단순히 이탈률 때문에 급하게 만든 조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입생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 휴학을 못하는 규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소속감 고취나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학사팀장은 학사팀 차원에서는 1년간 휴학 불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관련 부처에서는 황지수의원이 제안한 것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방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다. 기획처장도 전공탐색학기제란 이름으로 신입생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황지수의원은 관련 학칙시행세칙 개정 시 총학생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학사팀장에게 요청하다. 의원들은 학칙 제38조의 3항의 문구를 ‘통상휴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도록 하고, 학칙 제51조1항의1. ‘1전공’을 ‘제1전공’으로 수정 하는 것에 동의하다.

② 학칙 15조를 권외숙팀장이 설명하다.

의장은 학칙 15조 1항을 ‘부속기관,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으로 변경 표기하도록 제안하다.

의장은 의원들이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통과시키다.

4. 의장은 세 번째 대학원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대학원교학팀 오현준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① 김주영의원은 보충과목 이수제도 변경과 석사과정의 공통과목 이수 필수 사항이 폐지되고 학과 내규로 운영할 수 있게 변경되면, 학과간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학과별로 각기 다른 내규가 적용되는 경우 학생들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다. 대학원교학팀장은 전체 학과 중 95%정도의 학과가 변경되는 제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원교학팀에서 제시하는 안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다.

② 의장은 제4조 신설학과에 대한 학과평가가 2019학년도부터 신설되는 학과와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대학원교학팀장은 모든 학과와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이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다. 의장은 3항의 ‘일정기간 경과 후에’로 문구를 변경하도록 제안하다.

③ 의장은 20의2조의 2항의 지도교수가 석사지도교수인지, 석사과정의 지도교수가 3학기에 정해지는지 질의하다. 대학원교학팀장은 20의2조의 2항의 지도교수는 석사 지도교수이며, 석사과정생의 경우 보통 2학기에 지도교수가 배정된다고 답변하다.

④ 의장은 부칙 2조 2항이 소급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학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질의하다. 대학원교학팀장은 해당 학과들이 동의했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학과신설 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답변하다.

의장은 의원들이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다.

5. 의장은 네 번째 특수대학원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기획팀 권외숙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장은 의원들에게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수대학원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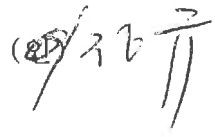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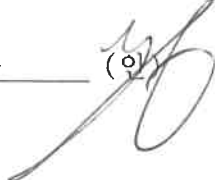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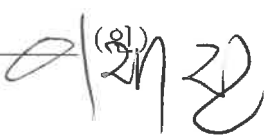
6. 의장은 다섯 번째 경영전문대학원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경영전문대학원교학팀 강소영 대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장은 의원들에게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영전문대학원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키다.

의장은 5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9학년도 제 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박종성</u> 	부의장 <u>이정규</u> 
의 원 <u>강영숙</u> 	의 원 <u>김주영</u> 
의 원 <u>김택동</u> 	의 원 <u>김화경</u> 
의 원 <u>신석하</u> 	의 원 <u>이성림</u> 
의 원 <u>이재진</u> 	의 원 <u>황지수</u> 